

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313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8월 일

발 의 자 : 오 승 철 의원

1. 제안이유

- 가. 현행 규칙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'2년'으로 고정하고 있어, 의회 임기 등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.
- 나. 이에 자문위원의 임기를 '2년의 범위 내에서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' 변경하여 의회 상황에 맞춰 임기를 유연하게 정함으로써,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'2년'에서 '2년의 범위 내에서 의장이 정하도록' 변경함 (안 제5조의2제3항)

3. 개정규칙안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: 해당없음

5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하남시의회 규칙 제 호

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규칙안

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3항 중 “2년으로 한다”를 “2년의 범위 내에서 의장이 정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의2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<u>2년으로 한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5조의2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</p> <p><u>2년의 범위 내에서 의장이 정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